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5. 2. 13(목) 10:00

제25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기획경제국 재무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유재산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가. 의안번호 : 제2663호

나. 제 출 자 : 윤영희 의원

다. 제출일자 : 2025. 1. 23.

라. 회부일자 : 2025. 1. 23.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유재산을 보호·관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적용범위(안 제3조)

다. 표지판의 설치 등(안 제4조)

라. 표지판의 규격(안 제5조)

4.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4조~제6조, 제14조

5.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구가 관리하는 공유재산 토지에 대하여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유재산을 보호·관리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일반재산으로 구분됨.

○ 동 제정안은 총 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는 본 제정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 안 제2조에서는 ‘공유재산’과 ‘공유재산 표지판’의 정의에 대하여,

- 안 제3조에서는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제1호[1]에 따라 금천구가 관리하는 토지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이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 안 제4조에서는 표지판의 설치와 그 내용에 대하여,

- 안 제5조에서는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성동구는 2025년 1월 2일 조례를 제정하였고, 소관부서인 재무과는 해당 조례에 따른 표지판 설치 및 영조물 보험 가입 비용을 15백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

1)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 **표지판 설치관련 우리구 예산 소요액 추계 : 15,060천원**

- 표지판 제작: 251필지(1,000㎡이상 토지) × 55,000원 = 13,805천원
- 영조물 보험: 251개(1,000㎡이상 토지) × 5,000원 = 1,255천원

※ 구유 토지 총 1,388필지(행정재산 1,316필지, 일반재산 72필지)

- 재무과는 일반인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는 나대지 또는 임야의 초입 부분 등 전체가 아닌 구유지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토지 일부에 한하여 표지판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관련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 공유재산법 제6조제1항[2]에서는 누구든지 공유재산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유재산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본 제정안은 이러한 이유로 공유재산 토지에 표지판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공유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상위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사유지와의 경계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는 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본 제정안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고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붙임 : 관계법령 1부. 끝.

---

2)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붙 임 **관계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90호, 2024. 1. 9.,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0.>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2. “물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제외한 동산을 말한다.

   가. 현금

   나. 유가증권

   다.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4. “관리”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취득·운용과 유지·보존을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5. “해당 지방자치단체”란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소유한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6. “처분”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의 매각, 교환, 양여(讓與),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의 소유권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8. “대부계약”이란 제5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 또는 물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무단점유자”라 한다)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4조(공유재산의 범위) ① 공유재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 종물

3. 공영사업 또는 공영시설에 사용하는 중요한 기계와 기구

4. 지상권·지역권·전세권·광업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

   가.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상표권

   나.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그 밖에 같은 법에서 보호되는 권리로서 같은 법 제53조 및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권리(이하 “저작권등”이라 한다)

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품종보호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식재산 외에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 다만,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권리는 제외한다.

6. 주식, 출자로 인한 권리, 사채권·지방채증권·국채증권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유가증권

7. 부동산신탁의 수익권

8.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으로 건설 중인 재산

9.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

② 제1항제3호의 기계와 기구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21. 4. 20.>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공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조례·규칙이나 그 밖에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존하고 있거나 보존하기로 결정한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② 행정재산은 「민법」 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하여 집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그 사무에 드는 경비를 보전(補塡)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시·군 및 자치구에 귀속시켜야 한다. <신설 2010. 2. 4., 2021. 4. 20.>